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년월일 : 1999년 5월 14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99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중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이 10,000원 이하의 제한세율로 변경되어 군세조례도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징세 비용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 현행 2기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제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회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며
-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함
(안 제20조)
- 나.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 다. 자동차세 납부제도중 년4회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함(안 제38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준칙(세회13400-1369, '98.12.23)-별첨
-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99.4.1~4.20)중 의견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바. 조례·규칙 심의회 : 제9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99.5.4) 원안가결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중 "1,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8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0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000씨씨 초과	220원

제38조제2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부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0조(세율) ① (생략) 가. <u>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u></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1. <u>승용자동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이하</td> <td>18원</td> <td>800씨씨이하</td> <td>100원</td> </tr> <tr> <td>1,500씨씨이하</td> <td>18원</td> <td>1,000씨씨이하</td> <td>120원</td> </tr> <tr> <td>2,000씨씨이하</td> <td>19원</td> <td>1,500씨씨이하</td> <td>160원</td> </tr> <tr> <td>2,500씨씨이하</td> <td>19원</td> <td>2,000씨씨이하</td> <td>220원</td> </tr> <tr> <td>2,500씨씨초과</td> <td>24원</td> <td>2,500씨씨이하</td> <td>25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씨이하</td> <td>31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씨초과</td> <td>370원</td> </tr> </tbody> </table>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2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6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초과	24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000씨씨초과	370원	<p>제20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가. <u>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u></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u>승용자동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이하</td> <td>18원</td> <td>800씨씨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씨씨이하</td> <td>18원</td> <td>1,000씨씨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씨씨이하</td> <td>19원</td> <td>1,500씨씨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씨씨이하</td> <td>19원</td> <td>2,000씨씨이하</td> <td>200원</td> </tr> <tr> <td>2,500씨씨초과</td> <td>24원</td> <td>2,000씨씨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8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0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4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00원	2,500씨씨초과	24원	2,000씨씨초과	22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2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6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초과	24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000씨씨초과	37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8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0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4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00원																																																														
2,500씨씨초과	24원	2,000씨씨초과	220원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 ③ <u>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③ <u>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u></p> <p>1. <u>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u></p> <p>2. <u>제1기분 납부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u></p> <p>3. <u>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u></p>																																																																

발신번호	12538	1.1.1.1.1	1998.12.23
수신번호	600	161	161
발신처			
수신처			

원 도

모사전송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전화(0361)56-9009/전송(0361)249-4029
 세정과 과장 : 주 기 운 담당자 : 김 태 영

문서번호 세회 13400- 1369
 시행일자 1998. 12. 23. (년)


선 결	화 장	영수증	지 시	22/14/23 내부
접 수	일 자	1998.12.23.	결 재	김태영
	시 간	:		
	번 호	1630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체 목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사항 통보

1. 세정 13400-802('97.12.9)와 관련입니다.

2. '99.1.1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이와 관련, 개정되어야 할 지방세 일반조례개정사항을 통보하여 사전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세 일반조례개정사항 1부. . 글.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지원국장 박수준

수신처 : 더(01~ 18)

<○○시(군)세 조례>

현행	개정																																
<p>제20조(서울) 제1항제1호 가목 ※ <u>표준서울</u></p> <p>제37조(과표표준과 서울)제1항제1호</p> <table border="1" data-bbox="211 439 715 795"> <thead> <tr> <th colspan="2">비영업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td>800씨씨이하</td><td>100원</td></tr> <tr><td>1,000씨씨이하</td><td>120원</td></tr> <tr><td>1,500씨씨이하</td><td>160원</td></tr> <tr><td>2,000씨씨이하</td><td>220원</td></tr> <tr><td>2,500씨씨이하</td><td>250원</td></tr> <tr><td>3,000씨씨이하</td><td>310원</td></tr> <tr><td>3,500씨씨초과</td><td>370원</td></tr> </tbody> </table> <p>제38조(납기와 징수)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u>하고</u> <u><신 설></u></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제3항중 <u>1,000원</u></p>	비영업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800씨씨이하	100원	1,000씨씨이하	120원	1,500씨씨이하	160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500씨씨초과	370원	<p>제20조(서울) 제1항제1호 가목(<u>제한서울</u>)</p> <p>제37조(과표표준과 서울)제1항제1호</p> <table border="1" data-bbox="751 439 1255 795"> <thead> <tr> <th colspan="2">영업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td>800씨씨이하</td><td>80원</td></tr> <tr><td>1,000씨씨이하</td><td>100원</td></tr> <tr><td>1,500씨씨이하</td><td>140원</td></tr> <tr><td>2,000씨씨이하</td><td>200원</td></tr> <tr><td>2,000씨씨초과</td><td>220원</td></tr> </tbody> </table> <p>제38조(납기와 징수)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u>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u>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u>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u>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u>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u>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u>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제3항 제3항중 <u>2,000원</u></p>	영업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800씨씨이하	80원	1,0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40원	2,000씨씨이하	200원	2,000씨씨초과	220원
비영업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800씨씨이하	100원																																
1,000씨씨이하	120원																																
1,500씨씨이하	160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500씨씨초과	370원																																
영업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800씨씨이하	80원																																
1,0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40원																																
2,000씨씨이하	200원																																
2,000씨씨초과	220원																																

"힘있는 국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232-800 / 강선 평창 평창 하리210-2 / TEL (0374)330-2296 / FAX(0374)330-2593
재무과(본청1층) 과장:신영선 지방행정주사:김두장 담당자:정유진(cksea99@netsgo.com)

문서번호: 재무 13400 - PPL

시행일자 1999. 4. 10

경유

받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관		76242 1		
부군수	전 결			
과 장	신영선	부과담당자 정유진		
기 안	김두장			
		협 조		

제목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99. 4. 1 ~ 4. 20(20일간)
2. 예고방법 : 평창군보 게재, 군, 읍·면 게시판 공고
3.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붙임 : 1. 읍·면 예고 결과 1부.
2. 군보 사본 1부. 끝.

도내 자치단체 행정수혜 비교 비교표 (단위:%)

항목 시·군	상수도 보급율	적령아동 취학율	주택 보급율	쓰레기 수거율	도로 포장율	대학수	종합 병원수
춘천시	83.0	96.7	82.2	100.0	80.1	3	2
원주시	80.3	98.2	85.6	100.0	82.7	6	2
강릉시	85.8	96.6	89.0	100.0	72.9	4	4
동해시	93.0	97.2	87.6	100.0	34.6	1	1
태백시	97.1	97.7	120.3	100.0	66.4	1	1
속초시	98.2	96.0	91.6	100.0	76.5	1	1
삼척시	74.1	96.8	110.1	100.0	63.8	1	1
홍천군	53.6	96.2	83.2	100.0	74.6		1
횡성군	38.1	97.9	96.4	100.0	71.0		
영월군	67.1	98.8	107.5	100.0	66.2	1	1
평창군	48.4	98.4	89.9	100.0	69.3		
정선군	73.2	94.3	135.7	100.0	52.2		
철원군	65.3	100.0	90.2	100.0	50.9		1
화천군	43.5	98.5	94.9	100.0	59.6		
양구군	52.7	98.7	93.5	100.0	65.7		
인제군	68.0	98.5	92.6	100.0	69.1		
고성군	76.3	97.9	93.1	100.0	40.8		
양양군	62.4	97.0	93.4	100.0	59.9		

※ 98년도 강원도 통계연보 참고

표본항목 대비 자치단체 행정수혜 계수

지수 시·군	표본항목 지수합산	합계
춘천시	0.830+0.967+0.822+1.0+0.801+0.9+0.6	5.920
원주시	0.803+0.982+0.856+1.0+0.827+1.8+0.6	6.868
강릉시	0.858+0.966+0.890+1.0+0.729+1.2+1.2	6.843
동해시	0.930+0.972+0.876+1.0+0.346+0.3+0.3	5.724
태백시	0.971+0.977+1.203+1.0+0.664+0.3+0.3	5.415
속초시	0.982+0.960+0.916+1.0+0.765+0.3+0.3	5.223
삼척시	0.741+0.968+1.101+1.0+0.638+0.3+0.3	5.048
홍천군	0.536+0.962+0.832+1.0+0.746	4.076
횡성군	0.381+0.979+0.964+1.0+0.710	4.034
영월군	0.671+0.988+1.075+1.0+0.662+0.3+0.3	4.996
평창군	0.484+0.984+0.899+1.0+0.693	4.060
정선군	0.732+0.943+1.357+1.0+0.522	4.554
철원군	0.653+1.0+0.902+1.0+0.509+0.3	4.364
화천군	0.435+0.985+0.949+1.0+0.596	3.965
양구군	0.527+0.987+0.935+1.0+0.657	4.106
인제군	0.680+0.985+0.926+1.0+0.691	4.282
고성군	0.763+0.979+0.931+1.0+0.408	4.081
양양군	0.624+0.970+0.934+1.0+0.599	4.127

균등할주민세 원가분석

(단위:원,건)

구 분	원 가 산 출 내 역	원 가 액	
총 계		6028.47	
원가항목비	인건비	$1,090,885 \div 30\text{일} \div 480\text{분} \times 6\text{분} \times 9\text{인}$	4090.81
	여 비	$10,000 \div 480\text{분} \times 32\text{분}$	666.66
	인쇄제본비	용지+ 토너+ 드럼 $50+ 12+ 5$	67
	발송비	우편료 1,170	1,170
	소모품비 (대사리스트)	136칼럼지+ 토너+ 드럼 $7+ 5+ 2$	14
	장비손료	지방세전산장비손료 20	20

균등할 주민세의 원가계산조사표

I. 균등할 주민세 개황

1. 세목명칭 : 주민세
2. 담당부서 : 재무과 부과계
3. 근거법류 : 지방세법 제172조 제1항
4. 현 요 율 : 1,000원
5. 3년간 평균처리건수 증가율 : 1%
6. 업무처리흐름 및 소용시간 : 15,120분

- ㉠자료수집-8시간(1인) ㉡자료변환,세액처리-8시간(1인)
㉢자료대사-16시간(8인) ㉣고지서출력-6시간(2인)
㉤발송-12시간(8인) ㉦

II. 수수료의 원가분석(1건당 비용)

1. 인 건 비 : 6,028.47원
2. 여 비 : 666.66원
3. 인쇄제본비 : 67원
4. 발 송 비 : 1,170원
5. 소모품 비 : 14원
6. 장비 손료 : 20원
7. 총 계 : 6,028.47원

III. 실비보상율 : 현요율 : 총계 = 16.5%

송 신 때	송신부 송신연번	5625	송신일시	99.5.14
	송신 주번	1111	송신 과	1211
	송신 자호	1107	서명 날인	

務 連 絡

수 신 시군 세무(세정·재무)과장

1999. 5. 14.

제 목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 추진현황 통보(업무참고)

(단위 : %, 원)

시군별	연 행	조 정	인상율	추진 상황
춘천시	시지역 1,800	시지역 3,600	100	- 실무 검토중('99.5.18 조례심의회 심의 계획/입법예고 완료) - '99.6월 임시회 상정계획
	군지역 1,000	군지역 2,000	100	
원주시	시지역 1,800 군지역 1,000	미정	-	- 당초 5,000원으로 입법예고('99.2.24~3.16)를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하향조정 검토중 - '99.6월 임시회 상정계획
강릉시	시지역 1,800 군지역 1,000	미정	-	- 실무 검토중('99.4.20~4.30 인상율에 관한 설문조사후 취합중) - '99.6월 임시회 상정계획
동해시	1,800	5,000	278	- 실무 검토중(지휘부 방침결정전) - 방침결정후 제반절차(입법예고등)이행 계획
태백시	1,800	5,000	278	- '99.5.18 공포예정('99.4.29 본회의 결정)
속초시	1,800	4,000	220	- '99.5.11 본회의 결정
삼척시	시지역 1,800 군지역 1,000	미정	-	- 실무 검토중(통·리장 및 지방세 심의의원 등 의견 조회중)
홍천군	1,000	5,000	500	- 입법예고 기간중('99.5.1~5.20) - '99.6월 임시회 상정계획

(단위 : %, 원)

시군별	현행	조정	인상율	추진상황
횡성군	1,000	5,000	500	- '99. 4. 27 의회심의 요구중(5. 30 경 의회개원 예정)
영월군	1,000	5,000	500	- '99. 3. 15 의회상정(상위 유보/인근시군과 형평 문제) - '99. 5월 임시회 재심의 계획
평창군	1,000	5,000	500	- '99. 5. 13 의회심의 요구(5. 19 의회개원 예정)
정선군	1,000	5,000	500	- '99. 5. 13 상위 통과('99. 5. 15 본회 결정예정)
철원군	1,000	5,000	500	- '99. 4. 10 공포
화천군	1,000	5,000	500	- 입법예고 기간중('99. 5. 10~5. 29) - '99. 6~7월 임시회 상정계획
양구군	1,000	미정	-	- 실무 검토중(5,000원으로 하여 추진중)
인제군	1,000	5,000	500	- 지회부(군수) 방침 결정됨 - 향후 의회개원시 상정계획
고성군	1,000	미정	-	- 실무 검토중(1안 3,000원, 2안 5,000원으로 하여 추진중)
양양군	1,000	미정	-	- 실무 검토중(1안 3,000원, 2안 5,000원으로 하여 추진중)

강 원 도 세 정 담 당 *김민서*